

# 일학습병행사업 운영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) 일학습병행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)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(개정 ‘25.5.15.).

**제2조(정의)** “일학습병행사업”이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(개정 ‘25.5.15.).

**제3조(업무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운영방안 수립
2. 산학협력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업무
3.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취업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4. 전공계절학기 강좌 개설 및 운영
5.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, 관리 및 평가 업무
- 6.<삭제, 2022.08.23.>
7. 교육과정 참여기관 발굴, 관리 및 협약체결
8. 참여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
9.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
10. 일학습병행사업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보고서 제출(개정 ‘25.5.15.)
11. 그 밖의 사업단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## 제2장 조 직

**제4조(단장, 부단장)** ①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센터)** ① 사업단에는 일학습병행센터를 둔다.

② 사업단에는 일학습병행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사업단 전담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(개정 ‘25.5.15.).

③ 센터장은 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센터에는 전담교수, 전담직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기능)** ① 일학습병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주요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(개정 '25.5.15.).

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행정처장이 되고, 나머지 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(개정 '25.5.15.)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1. 협약기업의 대표자 : 2명 이상(개정 '25.5.15.)
2. 지방고용관서의 소속 공무원 1명
3. (삭제 '25.5.15.)
4. 대학 학사 및 행정 지원 관련 부서 책임자 1명 이상
5. 대학 사업 참여학과 교수진 1명 이상
6.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일학습병행 담당부서장
7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일학습병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일학습병행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'25.5.15.)
2. 일학습병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제도 도입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(개정 '25.5.15.)
3.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학의 행·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5. 일학습병행사업의 성과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(개정 '25.5.15.)
6.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**제8조(의결)**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## 제4장 실무위원회

**제9조(구성)** ① 사업단의 성공적 사업 수행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원으로 하고,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심의사항)**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참여학생 추천 및 평가, 지도 관리 계획 수립

2. 관련 학사제도 개편 및 계획 수립
3. 참여기업 발굴 및 기업관리 프로그램 개발
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## 제5장 기업학생 매칭위원회<삭제, 2022.08.23.>

제11조(기능) <삭제, 2022.08.23>

제12조(심의사항) <삭제, 2022.08.23>

## 제6장 평가위원회

제13조(기능) ① 일학습병행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평가위원회를 둔다(개정 '25.5.15.).

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,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심의사항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평가
2. 기업 및 학생 만족도 평가
3. 실습생 수, 실습기업 수, 중도탈락율, 실습생 취업율 등 연차별 달성목표 평가
4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## 제7장 재정 및 보고, 기타

제15조(재원)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및 교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회계) 회계와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회계절차에 따른다.

제17조(예산과 결산)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 보고서,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8장 학사운영<신설, 2022.8.23.>

제19조(학사운영) 일학습병행사업 운영을 위한 학사운영은 「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운영 지침」에 따른다<신설, 2022.8.23.> (개정 '25.5.15.).

8-0-3~4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운영 규정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